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병도 의원 외 29명
- 나. 의안번호: 제2477호
- 다. 발의일자: 2021. 5. 28.
- 라. 회부일자: 2021. 6. 1.

2. 제 안 사 유

-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방안을 정함(안 제6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 전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이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이를 보완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범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목표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정책방향	 <p>1회용품 (컵, 봉투) → (생 산) 안 만들고 → (유통) 안 주고 → (소 비) 안 쓰 고 → 재활용 극대화</p>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적 이행 ◆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

동 대책의 핵심은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기관과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에 있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하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내용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며, 자원재활용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본 조례안은 생활패턴의 변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책무(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교육·홍보(제7조), 표창(제9조)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조(제 목)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삶의 질 확보 - 1회용품, 가회용품, 공공기관 등의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관련 시책 수립, 교육홍보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 명시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구입 예산 편성 제한 권고
제7조~제9조	- 교육홍보, 시민 참여 활성화, 표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1회용품과 다회용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을 서울

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시가 설립한 지방
직영기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 청사 내 또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에서 구매·사용의 제한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홍보와 시민참여 활성화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체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행 「서울
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바, 이후 상호 조례 간 중복 규정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